

## (산업용)윤활유 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

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주병기, 이하 ‘공정위’) 사무처는 윤활유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,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10개 윤활유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\*(이하 ‘피심인들’)에게 송부(‘26.6.4.)하고 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, 이로써 심의 절차가 개시되었다.

\* 광우, 극동유화, 디에이치케미칼, 범우켄, 범우케미칼, 범우화인켄, 범우화학, 에스에이치엘, 한국하우톤, 한유에스케이이티에스

※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음.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질 예정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

### <행위 사실>

심사관은, 피심인들이 '18. 1월 ~ '24. 10월까지(총 6년 9개월 간) 윤활유 공급가격에 대한 담합 및 입찰 담합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고, 이 사건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2조 2백여억 원으로 산정하였다.

본 건 담합의 대상이 된 윤활유는 금속 소재 가공시 절삭·연마 등의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금속가공유 및 산업 설비 작동, 기계·장비의 원활한 작동 등을 위해 사용되는 산업용 윤활유로서, 원유를 정제하여 생산하는 기유(Base Oil) 가격과 환율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. (붙임 참조)

### <심사관 조치 의견>

심사관은 위와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(가격담합) 및

제8호(입찰담합)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, 그에 대해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, 과징금 부과 및 관련자(임직원) 고발 의견을 제시하였다.

향후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%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<향후 일정>

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 의견 제출, 증거자료의 열람·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.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담합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카르텔조사국	책임자	과 장	이선미 (044-200-4533)
	제조카르텔조사과	담당자	서기관	김민아 (044-200-4537)
	경쟁정책국 디지털공정거래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신상일 (044-200-4362)
	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	담당자	조사관	정신우 (062-975-6800)



## 1. 윤활유 구분

① 금속가공유 : 금속 재료를 가공할 때 절삭, 연마 등의 작업을 원활하게 하고 작업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는 윤활제

- (절삭유) 금속 절삭 시 절삭공구와 가공물 사이에 마찰과 열을 줄이기 위해 사용
- (세정유) 금속 가공 후 남아있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
- (방청유) 금속의 부식인자를 차단하기 위해 사용

② 산업용 윤활유 : 산업 설비 작동, 기계·장비의 원활한 작동 등을 위해 사용되는 윤활제

- (유압작동유) 굴삭기, 프레스 등의 유압시스템에서 윤활, 냉각, 방청을 위해 사용
- (습동유) 공작기계의 레일 등 미끄러지는 부분을 윤활하기 위해 사용
- (기어유) 기어 사이의 마찰·마모를 줄이고 동력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

## 2. 윤활유 주요 원재료

① 기유(Base Oil) : 윤활유의 기본이 되는 성분으로 원유를 정제하거나 화학적으로 합성하여 생산

② 첨가제 : 윤활유 기능을 부여하고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

\* 산화방지제, 소포제, 방청제, 마모방지제 등